

January
2025

NEWSLETTER

공정거래 그룹 | Antitrust & Competition Group

CONTACT



변호사 정환

T: 02.772.4940
E: hwan.jeong@leeko.com

변호사 선정호

T: 02.772.4676
E: jeongho.sun@leeko.com

변호사 김수련

T: 02.2191.3253
E: suruyn.kim@leeko.com

변호사 이지미

T: 02.772.4752
E: miji.lee@leeko.com

2025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정위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4대 핵심과제로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②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추진, ③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④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공정위는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하도급대금과 유통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하도급 분야의 경우, 공정위는 2025. 1. 9.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나아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수급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2024년 서면실태조사에서 거래관행 개선도가 낮게 나타난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지연지급,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불공정 유통 관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였습니다.

| 분야 | 공정위 목표 | 구체적 이행 방법 |
|-----|-------------------------|--|
| 하도급 |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한 보호 장치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보증 예외 사유 축소 발주자 직접 지급 범위 확대 |
| |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한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 제한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 |
| 유통 |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정산 기한 준수 및 유용 방지 대책 마련 직매입, 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 검토 후 단축 추진 |

■ 가맹점, 대리점주의 사업여건 개선

공정위는 (1)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2)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대리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대리점계약 해지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화**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가맹본부의 배달, 이벤트 비용 전가 행위’, ‘유제품, 타이어 등 국민 생활 밀접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관행(비용전가, 경영간섭)을 점검, 조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자영업자 보호장치 확충 및 경영애로 해소

공정위는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합니다.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마련된 상생방안을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대우요, 자사우대 등 불공정관행을 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예약줄서기 앱, 원격 주문 앱, 테이블 주문 기기 등 **‘식당테크’**에 대한 불공정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불공정관행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미래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촉진

■ 담합 및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공정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담합에 대한 집중 감시를 예고했고, 특히 2025년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4대 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담합을 집중 점검**합니다.

4대 중점 점검 분야: 건강·안전, 의식주(식품, 가구 등),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또한 공정위는 **신유형 담합(AI를 활용한 담합, 정보교환 담합 등)**에 대한 사례, 법리 연구 및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핵심 주력 사업(통신, 자동차, 반도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주목하고 있고, **첨단전력,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기계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서면미발급, 대금미지급 등),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미래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경쟁 기반 확대

공정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효율화 합니다. 즉, 사업재편, 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 | |
|----------|--|
| 입법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6대 서비스 분야(중개, 검색, SNS, 동영상, OS, 광고)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대우요요구)를 억지하기 위한 입법 추진 |
| 집중 점검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구독형, 버티컬, 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끼워팔기, 거래강제, 경쟁사 진입 방해 등)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실제 판매되지 않는 가격을 정가로 표기하는 행위) |

3.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공정위는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소비자 보호'의 의지를 더욱 피력하며, 공정위의 관심 업종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위의 엄격한 감시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비해, 해당 업종의 기업들은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자율 준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공정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심 업종은 **결혼, 출산, 육아, 문화콘텐츠, 여행(항공), 건강관리, 상조**로, 연령별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청년층: 주요 결혼식장, 준비대행업체 가격 자율 공개 유도,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 (육아용품 부당광고) 중점 점검
- ② 중년층: 항공사 결합 후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운임인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헬스장 피해실태, 불공정관행 검토
- ③ 노년층: 상조정보조회 (가입정보, 납입금액, 보상가능금액 등) 및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 특수관계인간 대여·투자 등 불건전 자산운용 제한, 소비자 피해보상 해태 행위 제재

■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크패턴(소비자 기만 눈속임 상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C2C 플랫폼(예: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OTT 등 구독 서비스**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공정위는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해 (1) **신유형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등)** 환불비율 확대, 양도·환불 관련 이용약관 점검 (2) **AI 위싱(사업자가 자신의 제품, 서비스, 운영에 AI를 사용한다고 과장하거나 허위로 주장하여 실제보다 더 혁신적이거나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실태조사**, (3)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특수판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해외 플랫폼도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하고, **위해·인증 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합니다.

4. 대기업집단제도의 합리적 운영

■ 부당내부거래 감시, 제재 강화

올해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집중 감시 대상으로, **중소기업 주력 업종과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꼽았습니다.

| | |
|-----------|--|
| 주요감시대상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주력 업종: 외식업, 건물관리업■ 민생 밀접분야: 부동산, 의료 |
| 집중 점검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 계열사, 신생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익편취 |

또한,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사전 감시·적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기업집단포탈을 활용해 법 위반 징후가 포착된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국세청, 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 협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기업집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합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대기업집단 시책은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 |
|-------------------------|--|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 |
| 계열회사 제외 범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 확대: 사외이사 선임 후 신설 지배회사, 사외이사 지배 비영리법인(선임 전/후), 사외이사에 준하는 비영리법인 임원 지배회사, 비영리법인(선임 전후)도 제외 |
| CVC 규제 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VC의 외부출자비율 상한 확대 (40% → 50%) CVC의 해외투자상한 확대 (20% → 30%) |

■ **시장 자율 감시 기능 확대 및 기업 부담 완화**

공정위는 올해 기업들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1차 지정자료 제출 및 계열편입신고 창구를 **기업집단포털(eGroup)으로 일원화**하고, 진행상황을 공개하여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업현황, 재무정보 등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책은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는 법 집행 시스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의 활성화 및 등급평가 내실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사건자료의 수집·제출·관리 및 증거능력 유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6. 기업대응 전략

공정위의 2025년 업무계획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위의 점검과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사전 점검과 자율 준수 체계 강화를 통해 법 위반을 예방하고, 공정위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전 점검 강화**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 내외부적으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자율 준수 체계 마련**

CP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CP를 구축하고,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에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

■ 정책과 제도의 흐름 파악

공정위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법규와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은 매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공정위의 정책과 규제 흐름에 맞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